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본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구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농구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농구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구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농구경기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구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농구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농구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농구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농구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농구 경기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④ 농구 국가대표 지도자는 특정성별이 정원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선발 공고 후 특정성별의 지원자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